

화성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

(이은진의원 발의)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2. 9. 2. 이은진 의원

나. 회 부 일 자 : 2022. 9. 5.

다. 상 정 일 자 : 제215회 화성시의회 제1차정례회 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
(2022. 10. 4. 보류)

2. 제안요지설명(이은진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화성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
과 출산 장려를 위하여 무주택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
을 규정하기 위함.

나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(안 제1조).
-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함(안 제2조).
-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및 지원 대상을 규정함(안 제3조, 제4조).
- 지원 제외 대상을 규정함(안 제5조).
- 지원내용 등을 규정함(안 제6조).
- 신청절차와 대리수령을 규정함(안 제7조, 제8조).
- 환수조치 등을 규정함(안 제10조)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김동의 전문위원)

가. 본 조례안은 화성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
과 출산 장려를 위하여 무주택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
하는 내용으로,

- 나. 신혼부부 전세자금 이자지원 대상과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관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, 포용적 주거복지 실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며,
- 다.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었습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보류

7. 소수의견 요지 : 생략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화성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2. 9. 2. 화성시장

나. 회 부 일 자 : 2022. 9. 5.

다. 상 정 일 자 : 제215회 화성시의회 제1차정례회 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
(2022. 10. 4. 원안가결)

2. 제안요지설명(이준갑 토지정보과장)

가. 제안이유

-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는 내용으로 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법률 제17233호 및 대통령령 제31101호, 2020. 10. 8. 시행)됨에 따라 개정 조문 내용과 배치되는 회의의 비공포 조문을 삭제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회의의 비공포 조항 삭제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김동의 전문위원)

- 본 개정조례안은 「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조문 내용과 비치되는 ‘회의의 비공포’ 조문을 삭제하는 사항으로,
-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함에 따라 위원회의 투명하고 원활한 운영이 기대되며,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었습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 요지 : 생략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